

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·시설기준 등(제320조제1항 관련)

1. 인력기준

- 가. 면접인력: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
- 나. 평가인력: 항공전문가 및 영어전문가 각 1명 이상
- 다. 출제인력: 항공전문가 또는 영어전문가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. 이 경우 출제인력 중 1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등급을 소지해야 한다.
- 라. 운영인력: 2명 이상

2. 시설기준 등

- 가. 운영인력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할 것
- 나. 컴퓨터 기반의 시험(Computer Based Test)을 실시할 수 있고,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시설 등을 갖춘 시험장을 확보할 것
- 다. 시험문제, 평가기록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를 확보할 것

비고

1. "항공전문가"란 최근 10년 이내에 항공업무(조종·관제·무선통신)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2. "영어전문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
 - 나.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으로서 영어 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
 - 다. 영어 교육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
3. 동일한 인력이 동일한 응시자에 대해 면접과 평가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.
4. 면접·평가·출제인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행할 수 있다.